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0. 2. 5.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서민우 의원 등 6명(박종길, 김인호, 이신자, 이영빈, 김귀화)
- 발의일자: 2020. 1. 15.
- 회부일자: 2020. 1. 23.
- 상정 및 의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 2. 5.)

### 2. 개정이유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길고양이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호 반려견 놀이터의 정의 신설
- 안 제5조제3항 반려견 소유자 등의 의무 추가
- 안 제9조, 안 제10조 동물의 관리,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 신설
- 안 제11조, 안 제12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사항과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 종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수정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3조, 제4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호)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1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중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0. 1. 15. ~ 2020. 1. 28.) 결과: 의견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김휘용)

-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으로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집행부의 수정 의견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신설 예정인 「가슴줄의 길이 제한과 공동주택 등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호, 제5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 외 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후 방사기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정을 반영함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사료됨.

## 6. 질의 및 답변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토론요지: 집행부 수정의견 반영

## 8. 심사결과: 수정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9조제2호, 제3호, 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1항,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위원회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lt;삭 제&gt;</u>
<신 설>	제9조(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 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제9조(동물관리 등)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2m 이내로 한다.

3.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은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아

2. <삭 제>

3. <삭 제>

2.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 제>

	야 한다.	
<신 설>	<p>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u>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u> 단, 장마철 · 혹서기 · 혹한기 등의 기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p>	<p>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lt;삭 제&gt;</p> <p>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p>
<신 설>	<p>제1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u>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u></p> <p>②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p>	<p>제1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lt;삭 제&gt;</p> <p>① (개정안과 같음)</p>

	<p>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③ &lt;삭 제&gt;</p>
<신 설>	<p>제12조(반려견 놀이터 설치 ·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 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p> <p>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lt;삭 제&gt;</p>
제9조 ~ 제12조 (생략)	<p>제13조 ~ 제16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p>	<p>제12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p>